

##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9. 12.  
제출자 : 이천시장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 지정,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제하던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수입증지판매인을 시장, 읍·면·동장이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안 제8조).
- 나.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과 수입증지판매신청시 인감조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9조, 제10조제2항).
- 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하여 완화함(안 제12조).
- 라. 수입증지 판매인의 승계제도를 폐지함(안 제15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수입증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①증지는 시장,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읍·면·동장은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증지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신청”을 “판매인 신고절차”로, 동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판매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본청에 대한 판매인 신고는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신고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 읍·면·동장은 판매인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즉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읍·면·동장이 판매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를 “판매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10일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여 송인을 받아야 한다.”를 “2일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일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를 “2일전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필증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읍·면·동장은 판매인 폐지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중 “소인하여야 한다”를 “소인하여야 하며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별표중 “별표 제1호서식”을 “별표 2”로 하여 별표 제2호서식의 내용으로 하고, “별표 제2호서식”을 “별표 1”로 하여 별표 제1호서식의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아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판매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신고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이 이천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미터 )

2. 첨부서류 : 신분증, 위치도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입증지 판매인신고 필증

성 명

이천시수입증지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 수입증지 판매인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미터)

년              월              일

이              천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수입증지판매업명의(위치)변경신고서

신고번호 제 호			신고년월일		년 월 일
기 신 고 자	판매소위치		명 변 의 경 ~ 요 위 구 치 자	판매소위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명의 (위치)변경 사 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별지 제9호서식]

수입증지판매( )신고서

신고번호 제 호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소 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 월 일			
참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판매인 지정) ①증지는 시장, 읍·면·동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p> <p>②시장, 읍·면·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증지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③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8조 (판매인 신고) ①증지는 시장,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읍·면·동장은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증지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li> <li>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li> </ol>	<p>〈삭제〉</p>
<p>제10조 (판매인 지정신청) ①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 시(출장소)본청에 대한 판매인 지정은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지정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 (판매인 신고절차) ①판매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본청에 대한 판매인 신고는 시장에게, 기타의 판매인 신고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2차 자치 행정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p>②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 회장등 직원복지회 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거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시장, 읍·면·동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중지 교부를 받을 읍·면·동을 즉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④읍·면·동장이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11조 (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시장, 읍·면·동장은 판매인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즉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④읍·면·동장이 판매인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p> <p>①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판매인이 증거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1조 (판매인의 의무) ①----- ----- 판매 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12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p> <p>①----- ----- 2일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2일전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필증과 -----</p> <p>③읍·면·동장은 판매인 폐지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 (판매소의 위치) 중지판매소는 민원 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중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지장금고는 제8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u></p>	<p><u>&lt;삭제&gt;</u></p>
<p><u>제14조 (지정의 취소) ①시장, 읍·면·동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u>②지정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u></p> <p><u>③읍·면·동장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lt;삭제&gt;</u></p>
<p><u>제15조 (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10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u>&lt;삭제&gt;</u></p>
<p><u>제22조 (판매수익금 관리) 지장금고에서 중지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지장금고 설치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p>	<p><u>&lt;삭제&gt;</u></p>
<p><u>제24조 (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u></p>	<p><u>제24조 (증지의 소인) ..... ..... ..... 소인하여야 하며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u></p>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1호서식] (서식내용생략)	[별표 2] (현행 별표 제2호서식 내용과 같음)
(별표 제2호서식) (서식내용생략)	[별표 1] (현행 별표 제1호서식 내용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b>수입증지판매인지정신청서</b>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이 이천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이 이천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미터 ) 2. 직 업 3. 첨부서류 : 인감개, 위치도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미터 ) 2. 첨부서류 : 신분증, 위치도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신고인 성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b>(별지 제2호서식)</b>	
제 호 <b>수입증지판매인지정서</b> 성 명  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b>수입증지판매인신고필증</b> 성 명  이천시수입증지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 수입증지 판매인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미터 ) 2. 직 업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미터 )
년 월 일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이 천 시 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u>수입증지판매업명의(위치)변경신청서</u>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기 지 점 자	판매소위치		판매소위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명의(위치)변경 사 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청하오 니 중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u>수입증지판매( )신고서</u>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직 점 인 인	소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월일				
	참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u>수입증지판매( )신고서</u>		
신고번호 제 호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소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월일				
	참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